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의안 번호	1015
----------	------

제출년월일 : 2001. 1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사유

- 1994. 12. 26 용진군에서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대부동지역이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1-64호(2001.4.28)로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기에 대부동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관내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변경고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대부동지역($40,817\text{km}^2$)을 추가하여 안산시 전지역($144,773\text{km}^2$)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
- 과세제외 대상물건
 -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다만, 골프장·유원지·지상정착물(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은 제외)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 건축물
 - 당해연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부분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용 건축물(다만, 별장·고급주택은 과세)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
- 안산시시세조례 제52조

□ 기타

- 안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

안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안산시 고시 제2001- 호

지방세법 제238조 및 안산시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의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일

안 산 시 장

- 다 음 -

1. 부과지역 : 안산시 관내 전지역(144,773km²)

(단위: km²)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103,956	144,773	40,817	경기도고시 제2001-64호 (2001.4.28)로 변경결정

2. 고시내용에 대한 문의는 안산시청 시세과(481-30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과		시 세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시세과장 이 성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세담당 박 진 하
	담당자 성명·전화	이 태 복 (행정 3058)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180조 제2호(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

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골프장·유원지·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주택을 제외한다)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부과징수)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안산시시세조례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제6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6조(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세 요약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 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며
- 징수방법은 과세대상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과 같고 납기나 과세 표준도 같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함께 기재하여 징수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건축물: 매년 5월 1일, 토지: 매년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종합토지세 과표와 같음)
- 건축물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재산세 과표와 같음)

○ 세율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

○ 납부방법

- 건축물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이며 재산세와 함께 징수
- 토 지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이며 종합토지세와 함께 징수